

의안 번호	제3538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1월 15일 김포시장
- 나. 상정일자 : 2024년 12월 13일
- 다. 의결일자 : 2024년 12월 16일

2. 제안이유

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시행령(대통령령 제34445호, 2024. 4. 23. 공포, 2024. 4. 27. 시행) 일부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비율을 정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함. (안 제23조)

4. 검토의견 : 생략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생략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